

국 민 안 전 처

훈계 · 주의 요구

제 목 국고보조금 용도 外 사용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, 영월군, 양구군

관 련 자 ① 강원도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사업소 ○○지소) 지방○○○
○○ ○○○

② 영월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③ 양구군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7. 22. 부터 2016. 1. 2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
○ ○○○은 2015. 7. 6.부터 2016. 8. 10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1. 3.
3. 부터 2015. 5. 11.까지, 각각 강원도 ○○○○사업소 ○○지소, 영월군 ○○○
○과, 양구군 ○○○○과에서 근무하면서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
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하도록 규정
되어 있으며

이에 근거하여 강원도 ○○○○사업소 및 2개 군에서는 [표]와 같이 재해
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.

사업지구명	사업량	도금액 (백만원)	사업 기간	도급업체	비고
-------	-----	--------------	-------	------	----

○○3 지구	영구앵커공 33공 계단식옹벽 763m ³	832	2016.2.1.~ 2017.10.3.	(주)○○ ○○○	○○ 지소
○○1 지구	우수관거정비(D=1,200mm, L=230m)	815	2015.6.2.~ 2016.8.10.	(주)○○○○ ○○○	영월군
○○○ 저수지	제당송당 L=66m 등	875	2015.2.23.~ 9.21.	(주)○○○○ ○○○	양구군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강원도 ○○○○사업소 ○○지소에서는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2015년 9월 30일 예산이 재배정 승인되어 실시설계 용역이 11월에 준공된 ○○○3지구가 행정절차(계약심사, 산지전용 허가 등)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연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자 ○○○3지구 사업비 80,000천원 중 42,824천원을 지방비로 집행되어야 할 강원도 內 급경사지 7개소의 안전성검토 용역비로 사용하였고,

영월군에서는 ○○○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준공(2016.6.11) 8일 전 자연재해 위험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○○보건소 인근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예산 147,410천원을 용도 外로 사용하였으며,

양구군에서는 ○○○ 저수지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36,900천원을 군비사업인 ○○○저수지 진입도로에 사용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, 영월군수, 양구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사업 추진 시 국고보조금을 용도 外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